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발전적 이해

김 성 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 연구원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은 직접적인 관련 집단의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그런 만큼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대학입학 전형의 의미에 비추어 도출되는 규범적 원칙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전형요소 설정의 타당성, 전형유형 설정의 공정성, 전형과정의 자율성 등의 준거에 비추어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정책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개혁과 제도적 규범

5·31 교육개혁 방안(1995)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새 대학입학전형제도는 그 취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에서도 이전의 대학 ‘入試’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신적 가치관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학생 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무시

한 총점주의를 지양하고 특성적 점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성적반영 교과목을 대상에 따라 구분한다거나, 특별활동·봉사활동·수상경력 등 교과외 활동을 사정에 포함하는 등의 전형방법과 다양하게 설정된 전형유형은 과거의 획일주의적이 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탈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생부 도입과 관련해서 대학입학전형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1) 인식은 개념의 토대이자 산물로서, 인식과 개념은 상호작용한다. 즉, 어떤 事象에 대한 적확한 명명은 事象에 대한 발전적 인식을 가져오고 그러한 인식은 다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다. 지금까지 흔히 대학입시제도라고 했던 것은 시험성적만을 대학입학의 선별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통용되었던 것으로서, 이제는 시험의 전형요소가 반영되므로 대입전형제도라 해야 한다.

않다. 실로 대입전쟁이라 할 정도의 대입전형제도와 관련된 잡음은 주로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학입학전형제도에 대한 규범적 원칙을 설정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을 의식해 '개혁'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잠복되어 있던 모순이 표면화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조령모개식으로 교육제도가 변경되고 교육정책이 실행되어 왔던 오류는 근본적으로, 지탱할 다리가 없는 의자가 항상 빼켜 거리듯이, 행정행위를 논리적으로 지탱할 만한 규범적 원칙이 없었고 또한 그것을 설정하려는 의지나 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제도적 규범은 그러한 외재적 영향력을 제어하고 교육 본연의 논리로 교육제도를 수립하게 하는 근본장치이다. 물론 시대의 특수한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는 변하지만, 교육 본연의 이념에 비추어 유지되어야 할 교육제도의 보편적 원칙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입전형제도의 근본적 원칙들, 그리고 실제 집행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도출되는 문제들을 진단·처방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 글은 이러한 규범적 고찰로서 새 대학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입전형제도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발견되는 전형유형, 전형요소, 집행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입전형제도의 의미

대입전형제도는 선발과정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일견 일반사회에서의 선발과 비슷하

게 생각될지 모르나, 그 의미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제도적 시행착오를 모면할 수 없다. 특히 대입전형제도는 관련 이해집단의 민감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을 법한 대입전형제도를 모두 실험한 것과 같을 정도로 무수히 바뀐 우리나라의 대입전형제도는 단순히 '실험적'이라고 위안하기에는 실험의 규칙마저 상실한 무원칙한 제도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입전형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부재했거나 그릇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大學入學전형제도는 대학에서 수학할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을 법제화한 것이다. 대입전형제도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대학교육 적격자의 선발'이다. 즉, 대학교육은 보편교육을 추구하는 중등교육과 달리 전문고등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학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자만을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형유형 및 전형요소의 설정과 중요한 관련을 가진다.

대학入學전형은 일반사회, 특히 기업에서의 신입사원 선발과 차이를 가진다. 즉, 기업에서의 선발은 이윤추구 목적에 적합한, 이미 능력이 갖추어진 자를 선발하는 것임에 비해 대학 입학자 선발은 소비적 능력이 아닌 잠재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여 새로운 능력을 터득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입전형에서 특별전형 유형의 설정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대학입학銓衡은 곧 선택의 과정을 내포한다. 선택은 학생의 대학 선택, 대학의 학생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즉, 학생은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은 자율

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전형요소의 설정 및 제도집행상의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3. 교육正義와 특별전형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다양한 전형유형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원외로 선발하는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외에도 생계 곤란한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특별전형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정원내로 모집하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에는 실업고 출신 동일계 지원자, 선·효행자, 추천자, 고역자, 고령자 전형도 있는데 이들을 위와 다르게 일반전형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육적 선발에 있어 교육목표의 경험적 성취라는 교육적 준거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한편, 특별전형은 선발의 교육적 준거와는 무관하게 교육외적 요인에 의한 교육상의 불이익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전형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차등적 보상의 원칙(affirmative action, 역차별 정책)이다. 적극적 평등조치인 역차별 정책은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꾀차별 집단(소수 불이익 집단)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행위로서 진정한 평등, 즉 결과적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그 특정집단에 우선적 처우와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 특수교육대상자·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도, 여성할당제 등이 그것이다.

교육기회의 배분에서 이와 같은 특별전형을 인정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소수 불이익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상까지 생각할 정도로 복지적 관점을 터득하였거나 아니면 교육기회의 보상으로는 감히 동요하지 않을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97학년도 대학(개방대, 방송대 제외²⁾) 신입생 모집인원을 보면 대학 총모집인원 중 특별전형이 4.7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일반학생보다 독립적으로 전형하는 낮은 능력의 특별전형 지원자를 선발하게 되므로 正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회제도는 능률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지만, 그 근본적 존재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다. 제도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고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명한 이치이다. 교육기회의 배분과 관련된 제도에서 바로 이러한 정의의 관점은 기본적 규범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교육기회 배분정책과 관련된 교육정의의 관점은 역사주의 모형과 공리주의 모형으로 대별된다. 역사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역사는 교육기회의 배분문제를 숙고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어

2) 개방대의 정원내 특별전형은 산업체 경력자 전형 등으로서 일반대의 일반전형에 속해 있는 취업자 전형 등과 성격상 같기 때문에, 개방대의 특별전형과 일반대의 특별전형은 같은 범주로 둘 수 없으므로 여기서 제외하였다.

면 사람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일과적인 결과가 아니라 불평등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때, 역사주의에서는 그 결핍을 보상하기 위한 특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은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와 상관없이 교육기회 배분의 일차적 준거는 그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변론까지 섞는다면, 현재 능력이 많은 학생이 교육자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적은 학생들보다 그것을 더 많이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한정된 자원을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베풀어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최대이익을 가져오고, 나아가 재분배적 사회환원을 통해 소수 불이익 집단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리주의는 다분히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긍정적 어감과 달리 여기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오히려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조세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이익집단의 소유를 재분배하는 공적 기제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것을 통해 현재의 불평등 구조가 미래에 변경되지는 않는다. 즉, 여기서의 미래라는 것은 불이익 집단의 손해를 보정할 기약없는 미래인 것이다. 이 때 능력주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육성취 수준을 지위 변화의 주요동인으로 보고 교육기회 배분단계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별전형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역사의 단절을 괴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내신제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격차에 따라 형성된 지역적 차이에 따른 불이익 집단의 이익을 감안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불평등은 사회적 악이지만, 그것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인정 된다는 John Rawls의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적극적 평등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入學전형은 기업에서의 선발과 달리 ‘교육적 선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불이익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만, 한편으로 大學입학전형의 ‘고등교육 적격자 선발’이라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는 修學能力 수준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는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엄밀히 말해 논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역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적 불이익은 교육기회의 배분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지역적·경제적 체제를 조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 소유의 不可侵城인 이 사회에서 사회적 보상은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사적 소유의 不可侵性에 의한 사회적 보상의 한계는 교육제도에 ‘轉移的 補償機制’라는 특명을 준다. 즉, 교육기회의 보상을 통한 평등화로 사회적 보상이 실현된다는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킨 것이다. 책임도 없는 사회적 보상의 짐이 전가되면서 교육제도의 딜레마가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만약 현재의 사회적 불이익 집단의 교육적 저성취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는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 보상에 의해 그러한 불이익의 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적 보상은 반드시 고등교육 기회의 배분단계에서만 취할 일이 아니다. 초

· 중등교육 단계에서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교육 등을 실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인 아동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이미 정의적·인지적 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게 될 것이므로 능력의 차이에 대한 보상교육이 필요하다.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다소 부정적이긴 했지만, 미국의 경우 Sesame Street와 Head Star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러한 보상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흑인 등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실시함으로써 그들보다 점수가 높음에도 불합격된 일반전형의 백인학생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이지만 입학허가를 받은 바키 판례³⁾와 같은 소송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힘들다. 물론 그 학생도 흑인들과 비슷하게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였음에도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종류의 차별을 받은 것이 문제시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정의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기회균등의 원칙(공정한 경쟁의 원칙)이 우선하는가, 차등적 보상의 원칙이 우선하는가의 문제가 남겨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4. 전형요소 설정의 원리

지금까지의 대학입학전형제도에서 전형요소의 설정은 특성주의 모형과 보편주의 모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대학교육은 보편교육이 아니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특성주의 모형은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전형의 타당성이 일차적으로 특정영역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한 모형이다. '96학년도에도 몇몇 대학에서 수능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바 있었으나, '97학년도부터는 수능영역별 가중치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목 반영에서 예전처럼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계열이나 학과 특성에 맞는 몇 개 과목을 학교나 학생 혹은 학교가 지정한 범위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형에서도 다양한 특기자 전형과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적성과 소질, 능력을 존중하여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편주의 모형은 특정영역에서의 능력이나 소질보다는 보편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에 집착한다. 총점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보편주의 모형은 여러 가지 배경에서 형성되었지만, 가장 주된 배경

3)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Allan Bakke, 438 U.S. 265(1978). 바기는 백인으로서 캘리포니아 대학 Davis 캠퍼스 의과대학에 지원했으나 입학허가를 받지 못했다. 데이비스 의과대학은 100명의 학생을 받아들이는데, 이 중 16명은 소수집단 몫으로 배정하였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두 집단으로 각각 구분되어 달리 서열이 매겨졌다. 바기는 입학이 허가된 소수집단 출신 지원자의 어느 누구보다도 점수가 높았으나 입학할 수 없었다. 결국 바기는 데이비스 의과대학 입학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자신은 인종이라는 기준에 의해 불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바기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연방 대법원도 데이비스 대학에 입학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특별전형 그 자체를 긍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Kenneth A. Strike, *Educational Policy and the Just Society*,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215~216).

적 논리는 과열 학력경쟁 풍토 속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로 운영되어 입학전형제도에 의해 고교 교육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학입학전형에서 전 교과를 반영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대학입학 전형요소 설정의 딜레마가 있다. 즉,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특정영역에 대한 평가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한편, 전형요소의 설정이 고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고교 전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중등교육이라 할지라도 중학교와 (계열을 결정하기 전인) 고등학교 전반기 과정은 진로탐색기라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후반기는 진로결정기라 할 수 있으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선택교과제로 바꾸고, 물론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예컨대 1학년 성적은 전과목 성취도⁴⁾를 활용하고 2·3학년 성적은 학생선택 교과목의 성취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딜레마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교과제는 나이도별 개설, 교사간 선의의 경쟁 유도라는 긍정적 부수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

전형요소의 설정과 관련하여 새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정책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수능성적 급간제 도입이라든가,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확대 권장 등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도에만 집착하여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을 위한 평가의 타당성을 도외시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통합교과적 평가라는 형태로 수능을 실시하는 것은 또다른 보편주의적 평가척도를 고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이중의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과외가 성행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시급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특성주의 모형에서 추구하는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회에 걸친 교과별 학력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로 인해 혼란과 부담을 주는 수능시험 대신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수회의 교과별 학력고사를 실시하여 이를 학생부 성적 산출의 객관적 근거로 삼음으로써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줄이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성주의적 이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고사도 특성주의적 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대학들이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심리적 이중부담, 사교육비 증대 문제 등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본고사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이 계열별 혹은 학과별로 그 모집단위의 학문적 특성에 맞는 능력과 소질, 가치관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는 것은, 가구를 만들고자 하는 목수가 그에 적절한 원목을 스스로 선택

4) 여기서 성취도(achievement)란 석차, 석차백분율, 평어 등을 모두 포함하는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로서, 현재 평어만을 가리켜 성취도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개념적 오용이다.

하는 것처럼, 가르칠 각각의 교사가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스스로 선발한다는 자명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국·영·수 위주의 고사가 아니라 각 모집단위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고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교과별 학력고사에서 출제하기 힘든, 논술 등의 주관식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력, 종합적 판단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함으로써 특성주의적 전형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전형의 공공성과 자율성

앞서 대학입학전형의 의미를 규명하면서 그것은 선택의 과정, 즉 학교의 학생선택, 학생의 학교선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택이라는 것은 편재적 현상이자 보편적 권리의 행사이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한다 함은 그 대학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에 적합한 능력과 소질, 태도, 가치관을 가진 학생을 선택하는 자유를 전제로 하며, 학생이 대학을 선택한다 함은 학생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학문과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전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등교육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선택과정에 개입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형과정의 원리는 자율성 모형과 공공성 모형의 연속선상의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전형과정은 한마디로 공공성 모형에 치중한 정책 집행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대학 '자율' 조차도 정부가 '허용'한 것임은 이러한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통제의 잔재가 남아 있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의 자율적 결정이 문서상으로 공식화되어 있음에도 학생부 도입 취지를 실현한다는 명목 아래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부 반영을 극구 주장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교육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자격과 관련한 종교제한 등의 사안은 물론 과도한 고등교육 기회의 수요에 못 미치는 한정된 공급의 상황에서 자율적 결정보다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앞으로 모집인원의 수가 지원자수에 균접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 역시 사립학교의 전학이념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할 사안이다.

6. 제도적 문제점과 해결과제

지금까지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의미에 비추어 그 원리를 대별하고 추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교육제도는 그것이 교육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일관된 논리에 입각하여야 한다. 어떤 정책이 이러한 일관성을 상실한다면, 그 정책은 이미 방향타 없는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듯이 그 본래 취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행 대입전형제도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일관성의 부재를 발견하게 된다.

그 단적인 예가 실업고 출신자 전형의 실시이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독자적 기준에 의한 일반전형으로서 실업고 출신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농고·상고·공고 등 실업고를 졸업한 학생이 동일계를 지원할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실업고 졸업자가 일반고 졸업자와 달리 경험적·실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 특혜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내용은 경험적·실제적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그러한 지식이 없다고 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실업고 출신자가 대학진학에 불리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하여 혜택을 준다는 논리라면, 예컨대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를 지원할 때는 왜 가점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감점을 주거나 아예 응시계열을 제한하는 것인가? 실업계 고교는 근본적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제상 교육과정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의 교육과정과 다른 것이다. 실업고 학생들은 이를 알고 실업고에 진학한 이상, 일반고 자연계 학생이 진로를 바꿔 인문계열에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오히려 제한할 일이지 독립전형을 실시해 혜택을 줄 것이 아니다. 결국 실업고 출신자 우대 전형의 기저에 깔린 정책적 배경은 날로 쇠잔해 가는 실업고를 친홍시키기 위한 것이다. 1977년에 시행된 공고 졸업생의 동일계 대학 진학의 특전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의 정책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1996년의 통계를 보면,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670,161명 중 취업자는 218,033명으로 32.5%, 진학자는 368,164명으로 54.

9%이고, 일반고 졸업자 395,465명 중 취업자는 21,630명으로 0.5%, 진학자는 307,791명으로 78%이고, 실업고 졸업자 274,696명 중 취업자는 196,403명으로 71%, 진학자는 60,373명으로 22%이다.⁵⁾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정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92~'96년간에 전문대학 이상의 대졸자 수요는 32.4%에 불과하고, 고졸이나 중졸 이하의 인력수요가 6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고교 졸업후 취업자의 절대 다수는 실업고 출신인데 이마저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고 학생에게 진학시 특혜를 주는 것은 국가 정책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업고는 고교 졸업후 산업현장에 취업할 기능인력의 양성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데, 이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실업고 학생들이 모두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적이 낮아서 실업고에 입학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의 특혜를 주는 것은 또다른 정의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학교 교육체계를 개편하여 종합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고에는 직업과정을 확대하여 고교 입학 당시의 성적으로 대학 진학자와 취업자를 원천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입학 당시에 저조한 성적을 보였더라도 그 이후 고교 1, 2 학년 과정에서 계속적 노력을 통해 실력이 향상된 학생은 대학진학반에 편성시키고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과정에 편성시키

5)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6, p.244, 384.

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실업과 출신자도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이들이 고교 졸업후 취업을 했다면 정책목표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들이 고교 졸업후 일정 기간 취업을 하고 나서 취업자 전형으로 지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이러한 정책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같은 특별전형임에도 농어촌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외로 모집하고,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정원내로 모집하는 것은 모순이다. 즉, 모집인원이라 함은 대학의 부지·시설·설비·예산 등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원외’ 모집이라는 것은 결국 수량보다 적은 부피의 그릇 위로 넘치는 물이 훌러 쓸모없이 되듯이, 그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까지도 제대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질적으로는 상관특성(relevant characteristic)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는 무관특성(irrelevant characteristic)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지역적·경제적·역사적 요인에 의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형이라면 정원내로 모집한다고 해서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같은 위상의 특별전형을 모두 정원 내로 모집하는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7. 대입전형제도의 발전과제

지금까지 전형유형 설정, 전형요소의 설

정, 제도 집행과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대입전형제도를 수립·운영하는 원리를 모형화하여 대별하고,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현재 대입전형은 과거와 달리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은 정부가 규정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자율’마저도 정부의 제도 집행과정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되고 집행되는가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

새 대입전형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분쟁의 핵인 학생부만 하더라도 새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이론적 근거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과 일정까지도 제안했던 1995년 8월의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이종재 외 5인)에서는 그 도입시기를 1999학년도로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개혁’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성급하게 1997학년도부터 도입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수습·변경하느라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학교간 학력차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부를 도입함으로써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0학년도부터 국가 수준의 절대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절대평가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입전형자료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본적으로 교육이 교육계에서 도출된 교육 본연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강한 교육외적 요구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계가 아직까지 제도운영에서 자율성을 선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학조차도 구태의연한 고답적 방식으로 전형을 실시하거나 불투명한 전형 유형을 채택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 다양성,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자율을 빌미로 한 혼돈과 오용은 합리적 통제를 받음만 못한 것이다. 요컨대 정

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제도 운영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대학은 이를 선용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관련 집단도 집단이기주의의 행태를 버리고 공동체적 안목에서 대학입학전형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성기/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사지원부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역서로는 「가르침의 윤리학」이 있고,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재량권의 근거와 한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